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7일 12시 00분



목차

목차	2
신재생에너지	4
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	4
사업개요	4
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금액	4
문의 전화	4

신재생에너지

LP가스판매업체

주유소 현황

LPG충전소

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4. ~ 12월(선착순 접수이며, 예산소진 시 마감)
- 사업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(별표1)에서 규정한 단독(공동)주택 (2019년 한국에너지공단(센터)로부터 주택지원사업에 승인된 주택소유자에 한함)
- 사업비 : 420,000천원(도비 126,000, 시비294,000)
- 사업량 : 340여 세대
- 사업내용 : 단독·공동주택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설치비 일부 지원

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금액

에너지원	설비용량	국비	지방보조금		자부담
			도비	시비	
태양광	3kW이하	2,074~2,514	300	705	자부담 1,509
	~30kW/동	908/kW	300	255/kW	공동주택
태양열	14㎡이하	3,962~8,162	21.9/㎡	51.1/㎡	용량별 지원 금액차등
	14~20㎡이하	8,620~10,320	19.5/㎡	45.5/㎡	
지열	17.5kW이하	7,255~11,147	36/kW	84/kW	
연료전지	1kW이하	15,578	300/kW	700/kW	

* 태양광 3kW기준 사업비 상한액 : 5,600천원(국 1,680/ 도 420/ 시1,260/ 자부담 2,240)

문의 전화

- 비 지원 및 신청 문의 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(☎052-920-0114), 신재생에너지 콜센터(☎1588-3020)
- ☞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(<http://greenhome.kemco.or.kr>)
- 지방보조금 문의 :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(☎061-659-3614)

Yeosu Web Contents

